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29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지영 · 김용태 · 김대식 · 이인선 · 서천호 · 정성국
최수진 · 곽규택 · 백종현 · 이양수 · 임종득 · 나경원
김희정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5. 12. 19.

3. 회 부 일 : 2025. 12. 22.

※ 의안번호 : 154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와 구제조치를 하고, 법·제도·정책 등에 대하여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여 사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 -----.
1. 국회운영위원회 가. ~ 아. (생략)	1.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u>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u><삭 제></u>
2. 법제사법위원회 가. ~ 바. (생략)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사.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u>사. · 아.</u> (생략)	<u>아. · 자.</u> (현행 사목 및 아목과 같음)
3. ~ 17. (생략)	3. ~ 1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 및 개선 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 관련 단체·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아니하는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님.¹⁾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소속기관(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와 더불어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 기관임.²⁾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법원, 군사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하고 있음.³⁾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수행 업무와 연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2)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바.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관성이 있는 인권옹호 업무를 법무부⁴⁾에서 수행하고 있어 소관 기관 간 업무 연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연혁을 살펴보면, 2001. 5. 24. 제정(2001. 11. 2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5. 7. 28. 「국회법」 개정(2005. 7. 28. 시행) 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명시되었음.

이후 2008. 8. 25. 「국회법」 개정(2008. 8. 25. 시행)으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변경된 이래 소관 변경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⁵⁾

[표-2]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연혁

인권위법 시행(2001. 11. 25.) 시 ~ 2008. 8. 24.	2008. 8. 25. ~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4)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2008. 2.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수, 명칭 및 소관 사항 등을 조정함.

아울러, 해당 「국회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⁶⁾의 소관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⁷⁾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무위원회로 변경된 연혁적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 부칙은 제22대국회 후반기부터 시행되도록 시행일을 2026년 5월 3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그 시기가 도과되었으므로

6)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 부패방지와 관련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

7) 상임위원회 소관 변경 현황(2008. 8. 25. 「국회법」 개정)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운영위	○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법·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 국회사무처 소관 사항 ○ 국회도서관 소관 사항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사항 ○ <u>대통령비서실 소관 사항</u> ○ <u>대통령경호실 소관 사항</u>	○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법·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 국회사무처 소관 사항 ○ 국회도서관 소관 사항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사항 ○ <u>대통령실 소관 사항</u> ○ <u>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u>
법사위	○ 법무부 소관 사항 ○ 법제처 소관 사항 ○ 감사원 소관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 관련 사항 ○ 법원·군사법원 사법행정 관련 사항 ○ <u>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u> ○ <u>국가청렴위원회 소관 사항</u>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	○ 법무부 소관 사항 ○ 법제처 소관 사항 ○ 감사원 소관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 관련 사항 ○ 법원·군사법원 사법행정 관련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
정무위	○ 국무총리실 소관 사항 ○ 국가보훈처 소관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 ○ <u>금융감독위원회 소관 사항</u>	○ 국무총리실 소관 사항 ○ 국가보훈처 소관 사항 ○ <u>특임장관실 소관 사항</u>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 ○ <u>금융위원회 소관 사항</u> ○ <u>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u>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으로 인한 법률안 등의 의안 심사 절차 및 처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거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변경 시 경과조치 사례⁸⁾를 참고하여 법률안 등 의안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

[표-3] 개정안 부칙

부 칙
이 법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문 의 처
02)6788-5017

8) 법률 제2106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